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27
----------	-----

2020. 6. 24.(수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문희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0년 5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6월 01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6월 09일

(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박문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농촌체험마을 등이 관련 사업 추진 시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과 사업평가 시 실적이 부진할 경우 다음 연도 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개정(안 제2조)

- 농촌체험마을 등 사업운영 시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 참여 해야 하는 단서조항 신설(안 제4조)
- 체험마을 등의 사업평가 시 실적이 부진할 경우 다음연도 지원액의 변경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전문위원 : 오문석)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는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으로 제명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
 -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에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3호(농어촌 체험·휴양마을 사업자의 지정)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등 사업운영 시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 참여 해야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 - 안 제 10조는 농촌체험마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부진한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액의 변경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체험마을 운영의 책임성과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
- 본 조례안은 농촌체험마을 등이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, 절차상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체험을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마을의 소득증대 및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농촌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 또는 체험마을연합체(이하 “체험마을 등”이라 한다)는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, 시장·군수가 추천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 등으로 한다. 다만,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도지사는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체험마을 등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부진한 체험마을 등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체험을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마을의 소득증대 및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1. “농촌”이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1. “농촌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</p>
<p>제4조(지원대상) <u>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 또는 체험마을연합체(이하 “체험마을 등”이라 한다)는 운영 실적이 우수하거나, 시장·군수가 추천하거나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 등으로 한다.</u></p>	<p>제4조(지원대상) <u>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 또는 체험마을연합체(이하 “체험마을 등”이라 한다)는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, 시장·군수가 추천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 등으로 한다. 다만,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원내용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도지사는 농촌체험관광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지원내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는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체험마을등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0조(지도감독 및 평가)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<u>(신 설)</u></p>	<p>제10조(지도감독 및 평가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부진한 체험마을 등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u></p>

관계 법령

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“농촌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가. 읍·면의 지역

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
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

제5조(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) ①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·군수등“이라 한다)에게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사업목적, 대표자,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·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

2. 사업계획서

3.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

4. 그 밖에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